

2. 금융투자광고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일부 발췌

개정 2013.02.05.

제3절 투자광고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①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60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비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개정 2009.2.4.>
9.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3. 준비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 ② 협회는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매분기별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기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일부 발췌

개정 2013.02.13.

제3장 투자광고

제1절 총칙

제2-34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2.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3. 환매수수료
4.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6.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와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6,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단서신설 2011.8.19)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면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에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28, 개정 2010.1.29)
5. 삭제 <2011.8.19>
6. 삭제 <2011.8.19>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라.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율, 수수료 등(이하 이 호에서 "수익율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09.7.24)
13.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제12호에서 이동 2009.7.24)
14.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09.7.24, 2010.1.29)
15.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제2-39조(홈쇼핑 광고)

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3.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4.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5.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6.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가. 환매청구방법
 - 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라.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제240조(준수사항)

-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을 병기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9)
 1.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특정일(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되,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나.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다. 설정일 또는 설립일
 - 라.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개정 2010.1.29)
 - 마.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개정 2010.1.29)
 4.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병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③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8.19)
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0.1.29, 2011.8.19)
 2. 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0.1.29)
 3. 삭제 <2010.1.29>
- ④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29, 후단신설 2010.1.29)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3.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 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9, 개정 2011.8.19)
1.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2.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3.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자료의 출처가 동일한 평가회사일 것 (개정 2010.1.29)
3.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을 가장 상위 운용실적부터 차례대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별로 기준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2년 이상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운용실적의 등급이나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5. 삭제 <2010.1.29>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 가.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에 대해 제24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신설 2010.1.29)
- 나.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 (신설 2010.1.29)
- 다. 비교대상이 유형별 운용실적인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 (신설 2010.1.29)

제4절 투자광고의 심의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1.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가.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나.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라.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마.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 바.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사.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게재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5.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신설 2009.2.26)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가. 방송 (신설 2011.8.19)

나. 신문등 (신설 2011.8.19)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1.8.19)

라.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신설 2011.8.19)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44조(협회의 심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2.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3.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4.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②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③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4.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제2-46조(심사결과와 유효기간)

- 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또는 순위가 달라진 경우 해당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단서신설 2010.1.29)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2-42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한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개정 및 단서삭제 2010.1.29, 개정 2011.8.19)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광고로서 운용실적이나 수익률(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단서삭제 2010.1.29)

3. 그 밖의 투자광고: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개정 2010.1.29)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0.1.29)

가.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사항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신설 2010.1.29, 제3호에서 이동 2010.1.29)

나.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신설 2010.1.29)

다.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신설 2010.1.29)

3. 삭제 <2010.1.29>

4.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5.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결과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9)(본조제목개정 2010.1.29)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를 포함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20. . .)” (개정 2009.7.24, 2010.1.29)

2. 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20. . .)” (개정 2009.7.24,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투자광고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5절 제재 등

제2-50조(시정요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1조(제재)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09.8.28, 개정 2011.8.19)

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재사항
1. 외화증권에 투자·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3. 주식워런트증권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4. 시스템 트레이딩	○ 입력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5. 과세 관련사항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소득공제의 기준과 과세율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1.8.19)
6.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7. 신용공여	○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9. 파생상품(신설 2009.8.28)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계좌 잔고에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약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재사항
10. 고위험 채권(신설 201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황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신설 2011.8.19) ○ PF ABCP는 차주 또는 시공사의 유동성·신용 악화, 매입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의무 면제·불이행으로 인한 차환 실패 등 사정 발생시 원리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별표 10〉 (개정 2012.3.9)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 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 관계법규, 협회의 정관·규정, 그 밖에 자율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개정 2012.3.9)
-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다.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 라.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부당한 비교표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